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공데이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을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으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3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 위원

제4조제4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실무위원의”를 “분과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을 “분과위원회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각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시행 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차관 2. (생략) ③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제4조(공공데이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 30명 이내의 분과위원----- ---. ② 분과위원회----- -----.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 2.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 ----- ----- -----. 1. -----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⑦ 실무위원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위원회의는 공공데이터의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3.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략위원회 위원

④ 분과위원회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 분과위원회의의 위원장-----.

⑤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분과위원회-----

-----.

⑧ 분과위원회는 공공데이터 및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

데이터기반행정-----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과위원회-----
-----.

③ ----- 분과위원회-----

-----.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

제6조(출석수당 등) -----
분과위원회 -----

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u>실무위원회</u>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 <u>분과위원회</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468